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제4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 분	자격기준 등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동물학, 축산학, 의학,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

2. 시설 기준

구 분	세부기준	
부 지	· 전체면적: 1,000㎡ 이상 · 건물: 전체면적의 20%(200㎡) 이상	
시 설	진료실	· 임상병리,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추 것
	수술실	· 수술 관련시설을 갖추 것
	영상진단실	· 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추 것
	입원실	· 진료실과 구분·운영하되,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 케이지 및 시설을 갖추 것
	교육실	· 야생동물보호 홍보·교육관련 강의, 전시 및 영상 상영시설을 갖추 것
	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	· 냉동·냉장시설을 갖추 것
	먹이준비실	· 상하수도시설을 갖추 것
	재활시설	· 적정 면적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추 것
	창고시설	· 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냉장시설을 갖추 것
	격리·차폐시설	· 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室)을 갖추 것

3. 장비 구비기준

구 분	세부기준
구조차량	· 야생동물 구조·운송에 적합한 차량
재 질	· 나무, 종이, 금속 또는 플라스틱
운 반 장 비	<p>모형도(예시)</p>

운반상자 (예시)	공통	· 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
	대형 맹수류 (곰 등)	· 크기: 가로 1.8m, 세로 0.9m, 높이 0.9m · 재료: 합판(15mm), 철판(1.2mm), 각재(45mm), 평강 및 └ 평강(3×40mm), 윤형강(15mm) ※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
	그 밖의 맹수류	· 크기: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0.6m · 재료: 합판(12mm), 철판(0.9mm), 각재(45mm), 평강 및 └ 평강(3×40mm), 윤형강(12mm) ※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
포획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접용 장갑(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 2. 동물 이송상자 바닥깔개 3. 고글 등 눈 보호장치 4.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 양말 및 주머니 5.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해독제 포함) 6. 포획용 그물, 울가미 막대(Control Pole), 안전 집게(Grasper), 마취총, 파이프 마취총(Blow Gun), 막대 주사기 [Jab Stick(Pole Syringe)] 7.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진료장비 (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대 2. 수술대 3. 수술등 4. 흡입마취기 5. 환측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6. 수액펌프(인퓨전펌프) 7. X-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8. 초음파진단기 9. 광학현미경 10. 혈액검사장비 세트 11. 원심분리기 12. 집중치료시설(ICU, Intensive Care Unit) 13. 세균 배양기 14. 고압멸균소독기(Autoclave) 15. 자외선 소독기 16. 이비인후과 유닛(ENT UNIT) 17. 네블라이저(Nebulizer) 18. 검이-검안 장비 세트(otoscopy,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 19.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20.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21. 미세수술장비(루페 등) 22. 석션기 23. 의료소모품 일체 	